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7일

3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 개정으로,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도록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□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

- 대 상 : 충청북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
- 사용기관(도 출연기관)
 - 충북문화재단
- 감면내역 :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
- 적용시기 : 2020. 1. 1.부터

○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

□ (재)충북문화재단 출연기관 현황

- 설립 일 : 2011. 11. 30.
- 설립목적 :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 등을 위한 정책개발·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
- 주요사업 :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, 전통문화예술 계승·발전 사업, 문화·예술·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·자문 및 교육·연구 사업,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사업,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, 문화·예술·관광 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,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
- 소재지 :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4번길 7(우암동)
- 사용면적 : 370m²

5. 검토의견

○ 이번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2호(사용료 감면) 개정으로,
-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단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.

- 현재 충북문화재단은 연간 1,277만 1천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음.

- 금번 감면동의안으로 현재의 출연기관 임대사용료를 도비로 지원하고, 다시 납부 받는 형식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행정과정을 제거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행정운동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 다만, 충북인재양성재단 등 나머지 출자출연기관이 2017년 도유재산 감면동의안을 받았음에도 2019년에 감면 동의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붙임: 도유(행정)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부. 끝.